

개정 전	개정 후
<p>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.</p>	<p>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제2항에서 같다) 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-----</p>
<p>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p>	<p>---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-----.</p>
<p><신설></p>	<p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“미집행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</p>